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

운영위원회(구의회사무국)

의안번호	485
제 출 자	정혜영 의원 외 8명
의 안 명	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검 토	전문위원 유 천 곤

1. 제안이유

지방의원의 정책지원을 위한 정책지원관 운영 등 의회사무국 사무분장을 위해 「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조례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의회사무국 사무분장사항 규정

(안 제2조 제1항)

나. 팀 신설 및 의회사무국 소속 팀 사무분장 사항 규정

(안 제3조 제1항, 제2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해당 없음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입법예고: 2022. 3. 31. ~ 4. 6.

4. 검토의견

- 본 조례 시행규칙 개정(안)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구의회의 인사권독립과 관련 의회사무국의 추가적인 사무분장과 정책지원관 운영에 따른 팀 신설 및 그에 따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, 관련 규정 등 검토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